



2023년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내역  
검토보고서  
[경남에너지(주)]

2023. 6. 14.



태양 회계법인

# 제 출 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2023년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내역 검토 용역[경남에너지(주)]』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66

상 호 : 태양회계법인

대 표 이 사 : 오 철 호 (인)

담 당 이 사 : 조 현 진 (인)

# 목 차

검토보고서 .....	1
I. 용역의 개요 .....	3
1. 용역의 목적 및 범위 .....	3
2. 용역의 공정 .....	5
II. 용역결과 요약 .....	6
1. 총 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 요약표 .....	6
2. 용도별 요금 .....	7
III. 공급비용 산정기준 및 방법 .....	8
1. 요금산정의 원칙 .....	8
2. 적정원가의 산정 .....	9
3. 적정투자보수의 산정 .....	12
4. 정산금액 .....	15
5.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확대 .....	15
6. 공급비용 및 도시가스요금의 책정 .....	16
IV. 회사제시 공급비용 .....	17
1. 적정원가 .....	18
2. 적정투자보수 .....	19
3. 적정투자보수율 .....	19
4. 정산금액 .....	20
5.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 경감 .....	20

V. 회계법인 조정사항 및 도조정안 .....	21
1. 적정원가 .....	22
2. 적정투자보수 .....	26
3. 정산금액 .....	28
4.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 경감 .....	28
5. 용도별 공급비용산정 .....	29
VI. 기타사항 .....	31
1. 주택용 기본요금의 적정성 검토 .....	31
2.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	33
VII. 공급비용 조정명세서 .....	45
1. 총공급비용 명세서 .....	45
2. 공급비용 조정명세서 .....	46
3. 영업외비용 조정명세서 .....	47
4. 영업외수익 조정명세서 .....	47
5. 요금기저 명세서 .....	47
6. 운전자금 명세서 .....	48
7. 유형자산 명세서 .....	49
8. 유형자산 취득계획서 .....	50
9. 건설중인자산 명세서 .....	51
10. 가중평균 투자보수율 명세서 .....	52
11. 자기자본수익률 산정명세서 .....	52

별첨. 전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및 기본요금



# 검 토 보 고 서

경상남도지사 귀중

2023년 6월 14일

태양회계법인(이하 ‘당 법인’)은 경상남도의 요청에 따라 경남에너지주식회사(이하 “회사”)의 2023년 적용할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검토의 목적은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권역의 도시가스요금 산정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계산서가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내역의 작성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당 법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기업회계기준 및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토대로 회사가 제시한 공급비용 산정 관련 자료와 회사의 결산서 등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공급비용 산정내역 검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공급비용 산정 관련 자료 등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 법인이 제시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기술된 절차는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당 법인은 본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의견표명 및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본 보고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회사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의사결정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 거래 또는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향후 실적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 법인은 본 보고서 작성일 이후의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본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기간에 대한 추정은 다양한 제반 요소들의 변동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보고서상 사용되지 아니한 다른 제반 가정이 사용될 경우 용역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 양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오철호

## I. 용역의 개요

### 1. 용역의 목적 및 범위

#### 1.1. 용역의 명칭

- 『2023년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내역 검토 용역』

#### 1.2. 용역의 배경 및 목적

-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중 2023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및 용도별 공급비용 단가 조정
- 도시가스 수용가의 연료비 부담경감 및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 1.3. 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통상자원부, 2020.3.26)  
※ 산업부의 관련지침 변경시, 변경된 지침 적용

#### 1.4. 용역의 수행기간

- 2023년 3월 27일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

#### 1.5. 용역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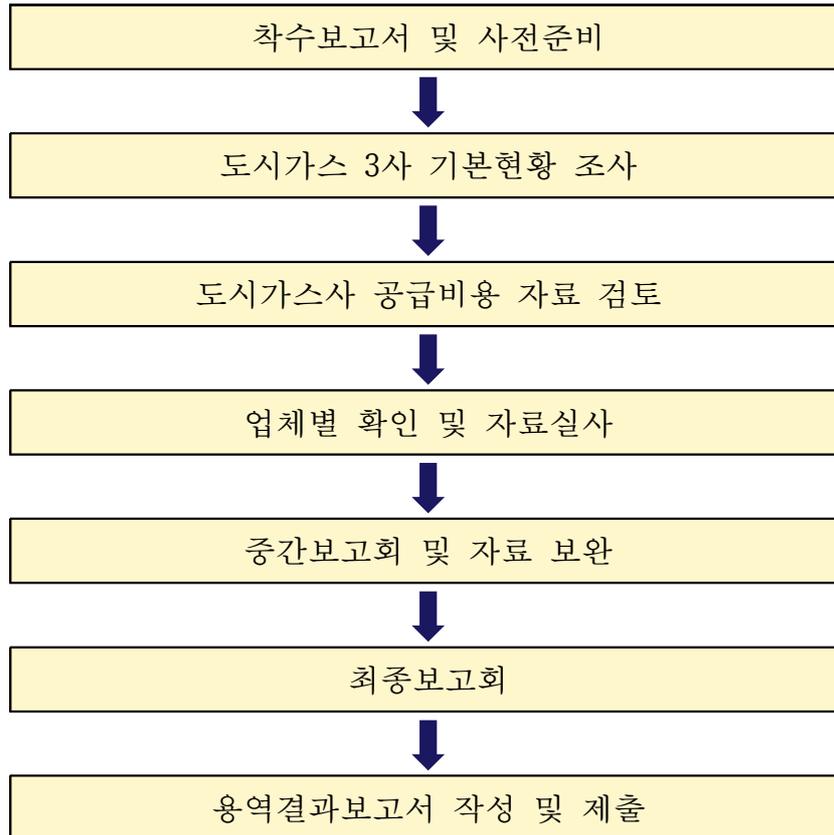
- 공급비용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2) 내용적 범위

- 경상남도 도시가스 판매열량 검토 및 산출
-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 경상남도 공급비용 적정성 검토
- 주택용 기본요금 산정
-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 1.6. 용역의 수행절차 및 방법

본 용역은 아래에서 도식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됨.



## 2. 용역의 공정

### 2.1. 용역 공정도

기 간 공 정	착수일로부터 80일간							
	0~10일	11~20일	21~30일	31~40일	41~50일	51~60일	61~70일	71~80일
용역착수 및 사전준비								
도시가스 3사 기본현황 조사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자료검토								
업체별 확인 및 자료실사								
중간보고회 및 자료 보완								
용역결과보고서 (중간·최종) 작성·제출								

## II. 용역결과 요약

### 1. 총 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 요약표

회사가 제시한 2023년 추정 총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에 대한 당 법인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정	회계법인 산정안	도조정안
A. 적정원가	91,315,851	-6,104,003	85,211,849	84,519,417
B. 적정투자보수 (①×②)	19,570,211	-2,612,362	16,957,849	16,949,751
① 요금기저	243,365,993	-2,549,358	240,816,635	240,701,635
② 적정투자보수율	8.0415%	-0.9997%	7.0418%	7.0418%
C. 총공급비용 (A+B)	110,886,062	-8,716,365	102,169,698	101,469,168
D. 정산금액	1,974,664	-574,719	1,399,945	-550,000
E. 미공급지역투자의무금액	-	-	-	-
F. 사회적배려대상자요금감면	2,241,338	-	2,241,338	2,241,338
G. 조정후총공급비용 (C+D+E+F)	115,102,064	-9,291,084	105,810,980	103,160,506
H. 추정판매열량 (천MJ)	39,357,875	-	39,357,875	41,380,575
I. 단위당공급비용 (원/MJ) (G÷H)	2.9245	-0.2361	2.6884	2.4930

## 2. 용도별 요금

상기 산정안 및 조정안에 따른 용도별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MJ)

항목		현재요금	용도별 요금 산정안	
			회계법인산정안	도조정안
월 기본요금	취사용	1,700	1,700	1,700
	개별난방	850	850	850
	지역난방(취사전용)	1,700	1,700	1,700
주택용	주택취사	2.7218	3.0617	2.9790
	주택난방	2.7218	3.0617	2.9790
	중앙난방	2.7218	3.0617	2.9790
업무난방		2.9880	3.3612	3.2704
일반용	영업1	2.9427	3.3102	3.2208
	영업2	2.4619	2.7694	2.6946
냉난방공조용		2.1238	2.3890	2.3245
산업용	산업용1	1.7242	1.9395	1.8871
	산업용2	1.6739	1.8830	1.8321
	산업용3	1.3222	1.4874	1.4472
	산업용4	1.2921	1.4535	1.4142
	산업용5	1.2619	1.4195	1.3812
	산업용6	1.2318	1.3856	1.3482
열병합용		2.1825	2.4551	2.3887
지역난방		1.5658	1.7613	1.7137
수송용		0.7134	0.8025	0.7808
미군용		2.3764	2.6732	2.4930
연료전지용		0.6554	0.7372	0.7173

상기 용도별 요금조정안은 각 대안별로 도출된 평균 공급비용을 바탕으로 전년도 용도별 요금체계를 고려하고 산업체 경쟁력 제고, 물가안정을 위한 주택용 요금억제 등 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 Ⅲ. 공급비용 산정기준 및 방법

#### 1. 요금산정의 원칙

##### 1.1. 공급비용

공급비용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제조, 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관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가스 원재료비 및 도매 공급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1.2. 총괄원가

총괄원가는 사업자의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가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1.3. 투자재원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의 여건 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설비 이용효율 제고로 인한 원가 인하 요인 발생 시 그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총괄원가 외에 별도의 투자재원을 가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 재원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의무화 조치 등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1.4. 부대사업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이 없는 수탁공사나 가스기기판매 등 부대사업관련 수익 및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1.5.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경감 등

시·도지사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요금경감 등 정부의 정책적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1.6. 산정기간

공급비용의 산정기간은 1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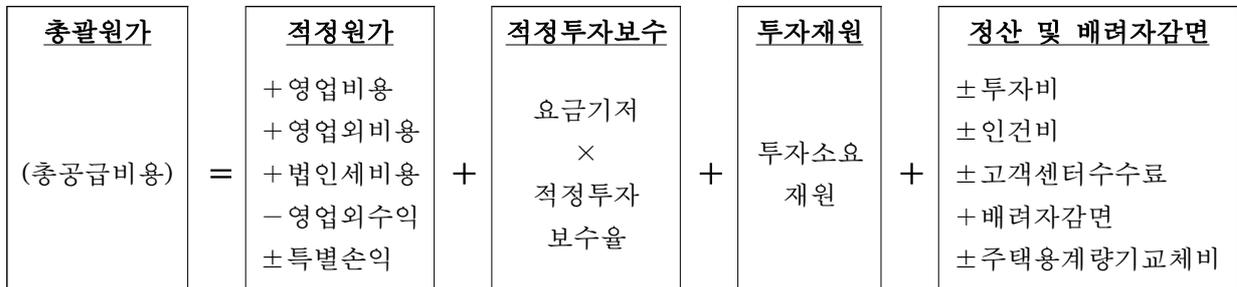
## 1.7. 판매열량

공급비용 산정기간 동안의 판매열량은 산정기간 중 집계가 완료되는 회사별 판매실적물량, 과거 3개년 평균판매물량을 이용한 잔여기간 추정물량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 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공고하는 공사계획을 고려한 당기 신규물량으로 구분하여 추정합니다. 다만, 산업용의 경우는 회사별 판매실적, 회사별 수요예측치, 관련 기관의 수요예측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 1.8. 공급비용단가

공급비용의 단가는 총괄원가를 당해연도의 판매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1.9. 총공급비용의 구성항목



## 2. 적정원가의 산정

### 2.1. 적정원가의 범위

적정원가는 영업비용 합계액에 영업외비용과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2. 적정원가의 주요항목별 산정방법

#### (1) 영업비용

##### 1) 인건비

- 저장·기화, 공급관리, 판매·일반관리 부문별 적정 인원수와 정부의 임금정책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급여 및 임금,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합니다.

- 인건비(퇴직급여 포함)의 경우 회사의 임금정책과 정부의 임금정책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감가상각비

- 공급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하며, 내용연수는 자산 취득 당시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 공급설비외의 자산은 사업자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 공급설비의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시설분담금, 재평가로 인한 증가분 및 투자재원 등을 제외한 취득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합니다.
- 유형자산의 당기 증감분은 기중 평균적으로 증감한 것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합니다.

## 3) 무형자산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는 직전년도 무형자산의 미상각잔액과 당해년도 취득예상 무형자산은 잔여상각 내용연수 동안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되 당해년도 취득분은 기중 평균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상각합니다.

## 4) 기타의영업비용

- 저장·기화부문·공급관리부문, 판매 및 일반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비용 항목별 비용 발생 변수를 감안하여 물가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접대비 등 관계 법령에 법정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비용은 그 한도 범위 내에서 반영합니다.
- 기타 영업비용의 경우 각 비용 항목별 비용 발생 변수를 감안하고 물가 변동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중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수용가로부터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을 부대사업 관련 수익 및 비용으로 처리하여 영업비용에서 제외합니다.
- 또한, 도시가스회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위탁에 대한 대가로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기타의 영업비용 항목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결정합니다.

## 5)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합니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합니다.

## 6) 영업외손익

- 영업외손익의 경우 차년도 영업외손익의 추정이 어려우므로 전년도 실적금액을 거치하여 요금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념적으로 볼 때 영업외비용 및 수익이 도시가스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총괄원가 산정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하며, 도시가스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제외하여야 타당합니다.
- 한편, 영업외비용 중 이자비용의 경우 적정투자보수의 타인자본보수에서 고려되므로 적정원가 산정시 영업외비용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7) 영업외비용

-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반영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반영합니다.(기부금의 경우 도시가스 배관망 주변 지역 민원 해결 지원사업,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 적용)
- 기타 영업외비용은 직전년도 실적금액을 거치하여 반영합니다.
- 기부금 등 관계 법령에 법정 한도액에 정해져 있는 비용은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반영합니다.
- 다만, 비정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유형자산의 처분 등으로 영업외비용에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적정한 방법으로 원가에 반영합니다.

## 8) 영업외수익

-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이자 및 투자자산관련 이익 등은 적정원가에서 반영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반영합니다.
- 기타 영업외수익은 직전년도 실적금액을 거치하여 반영합니다.
- 다만, 비정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유형자산의 처분 등으로 영업외수익에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은 적절한 방법으로 원가에 반영합니다.

## 9)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은 도시가스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법인세비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상의 법인세율로 산정합니다.

# 3. 적정투자보수의 산정

## 3.1. 적정투자보수의 구성

### (1) 적정투자보수의 정의

적정투자보수는 사업자가 도시가스를 제조,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의미합니다.

### (2) 적정투자보수의 구성

적정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적정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요금기저는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위하여 투자된 또는 투자될 금액을 의미하며, 적정투자보수율은 이러한 투자금액에 대한 적정 자본비용을 의미합니다.

## 3.2. 항목별 산정방법

### (1) 요금기저

당 회계년도의 순가동설비자산액, 순무형자산액, 일정분의 건설중인자산의 기초, 기말평균가액과 보증금 및 일정분의 운전자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도시가스의 제조, 공급

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1) 순가동설비 자산액

-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적정원가에 산입되었던 감가상각누계액과 증여자산, 시설분담금 및 투자재원과 같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은 자본적 수입의 누계를 차감합니다.
- 토지와 공급설비의 재평가차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직전년도 결산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은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에 당해연도의 투자계획 및 자산처분계획을 고려한 순증감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공급설비의 순증감액은 (전기 건설중인자산 평가액 + 당기 투자계획금액 - 당기 순처분자산순액 - 당기 중 감가상각비 추정액 - 당기 건설중인자산 평균가액)으로 하며 시설분담금 및 투자재원으로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2) 건설중인자산

- 공급설비 : 당기 건설중인자산 평균가액 × 자기자본비율(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지 않은 경우는 100%)
- 기타자산 : 기초 건설중인자산 가액과 회사의 계획상 건설중인자산 기말잔액의 평균 금액

#### 3) 무형자산

- 기초가액과 당기 상각액 및 당기 취득과 처분을 고려한 기말잔액의 평균 금액

#### 4) 운전자금

- 당해연도 원재료비를 제외한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 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

#### 5) 임차보증금 등

- 도시가스사업에 사용되는 사무실, 사택, 차량 등의 임차(전세)보증금이나 리스보증금 등의 경우 실제로 도시가스사업에 공여하는 경우 요금기저에 가산

## (2) 적정투자보수율

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율과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구성비율로 각각 가중평균하여 산정됩니다.

### 1) 자기자본 보수율 및 자기자본

-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보수율은 예금금리 등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자기자본: 유상증자누계액(주식발행초과금 포함)+당기순이익누계액(결손금제외)-배당금누계액
- 자기자본에서 제외되는 결손금은 최초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 이전의 결손금에 한합니다.

### 2) 타인자본 보수율 및 타인자본

- 타인자본보수율 : 직전년도 차입금 평균월말잔액(수용가시설 전대차입금은 제외)으로 동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나누어 구한 비율에 법인세를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 타인자본 : 직전년도 차입금 평균월말잔액으로 하며, 직전년도 차입금은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와 장기차입금 및 사채로 구성하며, 수용가시설전대차입금은 제외합니다. 단, 사업부채 형태의 회사는 사업부 고유 평균차입금과 회사 전체 평균차입금을 사업부 자산 가액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4. 정산금액

### 4.1. 판매열량차이정산

- 공급비용 산정 시 추정하였던 판매열량과 실제판매열량의 차이가  $\pm 1.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열량 차이를 정산하여 다음연도 공급비용 산정 시 총괄원가에 가감하여 반영합니다. 정산금액은 시·도지사가 승인한 승인총괄원가와 사업자가 사후적으로 회수한 회수총괄원가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 다만, 직전 회계연도 말 현재 도시가스사업으로 인하여 누적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자의 판매열량차이가  $+1.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정산금액이 다음연도 평균공급비용의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 4.2. 영업비용 등의 정산(배관투자비 정산&인건비 및 고객센터수수료 정산&가정용계량기교체비 정산)

- 영업비용 중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및 배관투자액(공급설비)과 관련해서는 추정액과 성실하고 능률적 경영하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 간에 차이(추정과 실적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과 실적차이를 정산.

## 5.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확대

- 가. 경제성 미달 등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이하 ‘미공급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급비용 승인 시 요금기저에 최대 3%의 범위 안에서 적정투자 보수를 가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나. 사업자는 상기 ‘가’ 항에 따라 적정투자보수를 추가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동 금액과 별도로 사업자 재원(추가로 인정받은 투자보수의 50% 이상)을 추가하여 미공급지역의 해당 공사에 전액 투자해야 한다.
- 다. 적정투자보수를 추가적으로 가산받은 사업자가 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차기 공급비용 산정 시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추가 투자보수에 무위험이자율을 가산하여 총괄원가에서 차감한다.

## 6. 공급비용 및 도시가스요금의 책정

### 6.1. 도시가스 요금수준 및 공급비용단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수준은 원재료비와 도매 공급비용에 총괄원가를 기초로 한 공급비용단가(소매공급비용)를 더하여 책정합니다. 또한, 공급비용의 단가는 총괄원가를 당해연도의 판매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6.2. 도시가스 요금체계

가. 시·도지사는 가스요금을 단일요금체계, 2부요금체계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강구·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에서 사용하는 용도(취사전용, 난방전용, 취사난방용 등)는 2부제 요금체제로 하고 그 외의 용도는 용도별 특성에 따라 적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2부요금체계는 다음과 같이 기본요금과 사용열량요금으로 구성됩니다.

- 기본요금은 수요가당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발생비, 송달비, 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 등을 기초로 산정하되, 기본요금 수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사용열량요금은 도시가스사업 관련 공급비용에서 기본요금으로 회수되는 금액을 차감한 공급비용을 판매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IV. 회사제시 공급비용

회사가 제시한 2023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A. 적정원가	91,315,851
B. 적정투자보수(①×②)	19,570,211
① 요금기저	243,365,993
② 적정투자보수율	8.0415%
C. 총공급비용(A+B)	110,886,062
D. 정산금액	1,974,664
E. 미공급지역투자의무금액	-
F. 사회적배려대상자요금감면	2,241,338
G. 조정후총공급비용(C+D+E+F)	115,102,064

## 1. 적정원가

회사가 제시한 2023년 주요 공급비용의 내역과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구성비율
영업비용	급여	20,427,261	22.37%
	퇴직급여	1,717,913	1.88%
	감가상각비	23,847,698	26.12%
	무형자산상각비	1,050,942	1.15%
	복리후생비	3,150,875	3.45%
	여비교통비	85,948	0.09%
	통신비	440,061	0.48%
	수도광열비	276,984	0.30%
	세금과공과	1,684,530	1.84%
	소모품비	800,389	0.88%
	지급입차료	-	0.00%
	수선비	3,590,425	3.93%
	보험료	422,797	0.46%
	접대비	39,600	0.04%
	지급수수료	5,089,117	5.57%
	도서인쇄비	48,567	0.05%
	광고선전비	226,466	0.25%
	안전관리비	3,439,890	3.77%
	차량유지비	1,195,501	1.31%
	회의비	39,390	0.04%
	연수비	484,482	0.53%
	대손상각비	613,795	0.67%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909,960	1.00%
고객센터수수료	16,185,413	17.72%	
소계	85,768,004	93.92%	
영업외비용	290,598	0.32%	
영업외수익	-379,869	-0.42%	
법인세비용	5,637,117	6.17%	
합계	91,315,851	100.00%	

## 2. 적정투자보수

적정투자보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말합니다. 적정투자보수는 도시가스사업에 필요한 자산금액의 합계인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2023년도 투자보수의 내역과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요금기저	투자보수율	투자보수	구성비율
운전자금	10,181,593	8.0415%	818,750	4.18%
유형고정자산	230,630,716	8.0415%	18,546,107	94.77%
무형고정자산	1,864,172	8.0415%	149,907	0.77%
임차보증금	689,511	8.0415%	55,447	0.28%
합계	243,365,993		19,570,211	100.00%

## 3. 적정투자보수율

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율과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구성비율로 각각 가중평균하여 산정됩니다. 회사가 제시한 2023년도 투자보수율의 내역과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투자보수율	금액 및 보수율	산식
자기자본	251,092,389	①
타인자본	1,756,477	②
자기자본보수율	7.0723%	③
타인자본보수율	2.6411%	④
의무이행 가산투자보수율	1.0000%	⑤
투자보수율	8.0415%	$(① \times ③ + ② \times ④) \div (① + ②) + ⑤$

#### 4. 정산금액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판매열량 정산금액	2,051,410
배관투자비 적정원가 정산금액	72,897
배관투자비 투자보수 정산금액	55,093
인건비 및 고객센터수수료 정산금액	-
주택용계량기 정산금액	-204,736
합계	1,974,664

#### 5.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 경감

회사는 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에 의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고 있으며, 그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사회적 배려 대상자	2,127,240
사회복지시설	114,097
합계	2,241,338

## V. 회계법인 조정사항 및 도조정안

공급비용 산정에 대한 검토결과 파악된 조정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정	회계법인 산정안	도조정안
A. 적정원가	91,315,851	-6,104,003	85,211,849	84,519,417
B. 적정투자보수 (①×②)	19,570,211	-2,612,362	16,957,849	16,949,751
① 요금기저	243,365,993	-2,549,358	240,816,635	240,701,635
② 적정투자보수율	8.0415%	-0.9997%	7.0418%	7.0418%
C. 총공급비용 (A+B)	110,886,062	-8,716,365	102,169,698	101,469,168
D. 정산금액	1,974,664	-574,719	1,399,945	-550,000
E. 미공급지역투자무금액	-	-	-	-
F. 사회적배려대상자요금감면	2,241,338	-	2,241,338	2,241,338
G. 조정후총공급비용 (C+D+E+F)	115,102,064	-9,291,084	105,810,980	103,160,506
H. 추정판매열량 (천MJ)	39,357,875	-	39,357,875	41,380,575
I. 단위당공급비용 (원/MJ) (G÷H)	2.9245	-0.2361	2.6884	2.4930

## 1. 적정원가

적정원가 검토결과 조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2023년			
	회사제시	조정	회계법인 산정안	도조정안
A. 영업비용	85,768,004	-4,742,780	81,025,224	80,335,224
B. 영업외비용	290,598	-180,800	109,799	109,799
C. 영업외수익	-379,869	-34,897	-414,766	-414,766
D. 법인세비용	5,637,117	-1,145,526	4,491,591	4,489,160
E. 지연조정공급비용차이	-	-	-	-
F. 적정원가 (A+B+C+D+E)	91,315,851	-6,104,003	85,211,849	84,519,417

**1.1. 영업비용**

영업비용에 대한 검토결과 조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2023년			
	회사제시	조정	회계법인 산정안	도조정안
급여	20,427,261	-1,315,862	19,111,399	18,961,399
퇴직급여	1,717,913	-286,733	1,431,180	1,431,180
감가상각비	23,847,698	-30,192	23,817,506	23,817,506
무형자산상각비	1,050,942	-53,779	997,163	997,163
복리후생비	3,150,875	-93,220	3,057,655	3,057,655
여비교통비	85,948	-36,820	49,128	49,128
통신비	440,061	-21,524	418,537	418,537
수도광열비	276,984	-41,528	235,456	235,456
세금과공과	1,684,530	-273,527	1,411,003	1,271,003
소모품비	800,389	-72,312	728,077	728,077
수선비	3,590,425	-843,009	2,747,416	2,747,416
보험료	422,797	-98,605	324,192	324,192
접대비	39,600	-	39,600	39,600
지급수수료	5,089,117	-508,593	4,580,523	4,580,523
도서인쇄비	48,567	-	48,567	48,567
광고선전비	226,466	-	226,466	226,466
안전관리비	3,439,890	-230,816	3,209,074	3,009,074
차량유지비	1,195,501	-256,600	938,901	938,901
회의비	39,390	-	39,390	39,390
연수비	484,482	-112,636	371,846	371,846
대손상각비	613,795	-453,539	160,256	160,256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909,960	-13,483	896,478	896,478
고객센터수수료	16,185,413	-	16,185,413	15,985,413
합계	85,768,004	-4,742,780	81,025,224	80,335,224

### (1) 인건비

인건비는 2022년 인건비 실적을 기준으로, 회사의 인건비 지급규정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조정된 인건비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 규정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의 2023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2023년			
	회사제시	조정	회계법인 산정안	도조정안
급여	20,427,261	-1,315,862	19,111,399	18,961,399
퇴직급여	1,717,913	-286,733	1,431,180	1,431,180
합계	22,145,174	-1,602,595	20,542,579	20,392,579

### (2)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공급설비는 자산 취득 당시 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기타의 유형자산은 회사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시설 분담금 및 재평가로 인한 증가분 및 투자재원을 제외한 취득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감가상각비는 가스사업과 비가스사업에 대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안분, 공급설비 기초가액과 2023년 감가상각비의 재계산 및 투자계획 중 공급설비의 집행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차기 연도로 이월함에 따른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2023년			
	회사제시	조정	회계법인 산정안	도조정안
감가상각비	23,847,698	-30,192	23,817,506	23,817,506
무형자산상각비	1,050,942	-53,779	997,163	997,163
합계	24,898,641	-83,972	24,814,669	24,814,669

### (3) 기타영업비용

영업비용에 대해서는 2022년 실적에서 공통사업부문 비용 등을 차감한 후 물가상승률(5.00%)을 반영하였으며, 상승 유인이 있는 항목은 검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1.2.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등을 제외한 기타의 영업외비용은 직전연도 실적금액을 거치하여 공급비용에 반영합니다. 검토결과 영업외비용에 대해 조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2023년			
	회사제시	조정	회계법인 산정안	도조정안
기부금	180,846	-180,846	-	-
유형자산처분손실	-	46	46	46
잡손실	109,753	-	109,753	109,753
합계	290,598	-180,800	109,799	109,799

## 1.3.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에 대한 검토결과 조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2023년			
	회사제시	조정	회계법인 산정안	도조정안
유형자산처분이익	21,995	-6,817	15,178	15,178
잡이익	357,874	41,714	399,588	399,588
합계	379,869	34,897	414,766	414,766

## 1.4.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에 대한 검토 결과 조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요금기저 및 조정사항을 고려하여 산정된 법인세비용입니다.

(단위 : 천원)

항목	2023년			
	회사제시	조정	회계법인 산정안	도조정안
법인세비용	5,637,117	-1,145,526	4,491,591	4,489,160

## 2. 적정투자보수

적정투자보수 검토결과 조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2023년			
	회사제시	조정	회계법인 산정안	도조정안
A. 영업비용	85,768,004	-4,742,780	81,025,224	80,335,224
B. 비현금비용	27,230,349	-824,244	26,406,105	26,406,105
① 감가상각비	23,847,698	-30,192	23,817,506	23,817,506
② 대손상각비	613,795	-453,539	160,256	160,256
③ 무형자산상각비	1,050,942	-53,779	997,163	997,163
④ 퇴직급여	1,717,913	-286,733	1,431,180	1,431,180
C. 퇴직급여지급액	2,551,905	-	2,551,905	2,551,905
D. 운전자금 ( $(A - B + C) \times 2 \div 12$ )	10,181,593	-653,089	9,528,504	9,413,504
E. 유형자산	230,630,716	-965,896	229,664,821	229,664,821
F. 무형자산	1,864,172	-241,583	1,622,589	1,622,589
G. 임차보증금	689,511	-688,790	722	722
H. 요금기저 (D+E+F+G)	243,365,993	-2,549,358	240,816,635	240,701,635
I. 적정투자보수율	8.0415%	-0.9997%	7.0418%	7.0418%
J. 적정투자보수 (H×D)	19,570,211	-2,612,362	16,957,849	16,949,751

### 2.1. 운전자금

회사제시 요금기저에 포함된 운전자금은 영업비용(원재료비 제외)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및 대손상각 등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본 법인의 조정안에는 앞에서 검토한 회사의 영업비용을 조정함으로써 운전자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습니다.

### 2.2. 유형자산

회사는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유형자산 산정시 유형자산 증가계획치에 배관설비 증설 등을 위한 신규투자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토지 등 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당기 승인된 공급설비 투자금액은 19,950백만원입니다.

### 2.3. 무형자산

회사는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 산정시 무형자산 증가계획치에 당기상각비를 반영하여 산출된 기말장부상 금액과 전기말 장부상 금액을 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2.4. 임차보증금

회사는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 산정 시 숙소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 2.5. 투자보수율

투자보수율 검토 결과 조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2023년			
	회사제시	조정	회계법인 산정안	도조정안
A. 자기자본	251,092,389	2,149	251,094,537	251,094,537
B. 타인자본	1,756,477	-	1,756,477	1,756,477
C. 자기자본보수율	7.0723%	-	7.0723%	7.0723%
D. 타인자본보수율	2.6411%	0.0484%	2.6895%	2.6895%
E. 가중평균투자보수율	7.0415%	0.0003%	7.0418%	7.0418%
F. 의무이행 가산투자보수율	1.0000%	-1.0000%	0.00%	0.00%
투자보수율	8.0415%	-0.9997%	7.0418%	7.0418%

적정투자보수율 산정시 필요한 타인자본보수율은 회사의 전년도 평균차입금대비 세후이자비용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회사는 2.6411%로 타인자본보수율을 제시하였습니다.

자기자본보수율은 예금금리 등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회사는 특정자산의 위험프리미엄이 시장포트폴리오의 위험프리미엄과 해당자산의 시장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CAPM 이론에 따라 자기자본수익율을 산정하였습니다. 동 이론에 따라 무위험수익률은 5년 만기 국고채 최근 12개월 평균수익률인 3.32%를 적용하였고, 시장위험프리미엄은 6%의 고정 위험 프리미엄에 적용베타를 0.6256로 산정한 값인 3.7536%를 제시하였습니다.

회사는 타인자본보수율과 자기자본보수율을 기초로 타인자본금액과 자기자본금액을 고려하여 최종 적정투자보수율을 8.0415%로 제시하였고, 당 법인의 검토 결과 법인세율의 조정에 따라 타인자본보수율 및 가중평균투자보수율이 각각 2.6895%, 7.0418%로 조정되었습니다.

### 3. 정산금액

당 법인의 검토 결과 회사제시 정산금액 중 조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2023년			
	회사제시	조정	회계법인 산정안	도조정안
판매열량 정산금액	2,051,410	15,560	2,066,970	117,025
배관투자비 적정원가 정산금액	72,897	-	72,897	72,897
배관투자비 투자보수 정산금액	55,093	-	55,093	55,093
인건비 및 고객센터수수료 정산금액	-	-590,279	-590,279	-590,279
주택용계량기 정산금액	-204,736	-	-204,736	-204,736
합계	1,974,664	-574,719	1,399,945	-550,000

당기 승인된 주택용계량기 교체비용은 2,894백만원입니다.

### 4.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 경감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경감되는 요금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그 부담액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경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공급비용 경감액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공급비용 계산시에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회계법인 검토결과(회계법인산정안 및 도조정안) 회사제시액을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2023년			
	회사제시	조정	회계법인 산정안	도조정안
사회적 배려대상자	2,127,240	-	2,127,240	2,127,240
사회복지시설	114,097	-	114,097	114,097
합계	2,241,338	-	2,241,338	2,241,338

## 5. 용도별 공급비용산정

용도별 공급비용 조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MJ)

항목		현재요금	용도별 요금 산정안	
			회계법인 산정안	도조정안
월 기본요금	취사용	1,700	1,700	1,700
	개별난방	850	850	850
	지역난방(취사전용)	1,700	1,700	1,700
주택용	주택취사	2.7218	3.0617	2.9790
	주택난방	2.7218	3.0617	2.9790
	중앙난방	2.7218	3.0617	2.9790
업무난방		2.9880	3.3612	3.2704
일반용	영업1	2.9427	3.3102	3.2208
	영업2	2.4619	2.7694	2.6946
냉난방공조용		2.1238	2.3890	2.3245
산업용	산업용1	1.7242	1.9395	1.8871
	산업용2	1.6739	1.8830	1.8321
	산업용3	1.3222	1.4874	1.4472
	산업용4	1.2921	1.4535	1.4142
	산업용5	1.2619	1.4195	1.3812
	산업용6	1.2318	1.3856	1.3482
열병합용		2.1825	2.4551	2.3887
지역난방		1.5658	1.7613	1.7137
수송용		0.7134	0.8025	0.7808
미군용		2.3764	2.6732	2.4930
연료전지용		0.6554	0.7372	0.7173

상기 용도별 공급비용 조정안은 각 대안별로 도출된 평균 공급비용을 바탕으로 전년도 용도별 공급비용 체계를 고려하고 산업체의 경쟁력 제고, 물가안정을 위한 주택용 요금의 억제 등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으며, 용도별 공급비용의 조정안별 전기대비 공급비용의 증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MJ)

항목		회계법인산정안		도조정안	
		증감액	증감율	증감액	증감율
월 기본요금	취사용	-	-	-	-
	개별난방	-	-	-	-
	지역난방(취사전용)	-	-	-	-
주택용	주택취사	0.3399	12.49%	0.2572	9.45%
	주택난방	0.3399	12.49%	0.2572	9.45%
	중앙난방	0.3399	12.49%	0.2572	9.45%
업무난방		0.3732	12.49%	0.2824	9.45%
일반용	영업1	0.3675	12.49%	0.2781	9.45%
	영업2	0.3075	12.49%	0.2327	9.45%
냉난방공조용		0.2652	12.49%	0.2007	9.45%
산업용	산업용1	0.2153	12.49%	0.1629	9.45%
	산업용2	0.2091	12.49%	0.1582	9.45%
	산업용3	0.1652	12.49%	0.1250	9.45%
	산업용4	0.1614	12.49%	0.1221	9.45%
	산업용5	0.1576	12.49%	0.1193	9.45%
	산업용6	0.1538	12.49%	0.1164	9.45%
열병합용		0.2726	12.49%	0.2062	9.45%
지역난방		0.1955	12.49%	0.1479	9.45%
수송용		0.0891	12.49%	0.0674	9.45%
미균용		0.2968	12.49%	0.1166	4.90%
연료전지용		0.0818	12.48%	0.0619	9.44%

## VI. 기타사항

### 1. 주택용 기본요금의 적정성 검토

#### 1.1. 개요

주택에서 사용하는 취사용 주택난방용은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으로 구성된 2부제 요금체제로 하고, 그 외의 용도는 용도별 특성에 따라 적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부제 요금체계는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은 수용가당 일정하게 발생하는 공급관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 발행비, 송달비, 지로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 등을 기초로 산정하되 기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택용 기본요금을 주택난방용에 대해서는 수용가당 월 850원, 취사전용 및 지역난방용에 대해서는 수용가당 월 1,7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본요금은 실제발생비용에 미달하는 수준으로서 실제비용반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취사용(취사전용/지역난방)			난방용(개별난방)		
	연간비용	기본요금 반영액 <sup>주1)</sup>	수용가당 기본요금 <sup>주2)</sup>	연간비용	기본요금 반영액	수용가당 기본요금
감가상각비	548,701	415,490	667	6,603,566	2,687,264	295
검침료	171,295	129,709	208	2,506,388	1,019,953	112
송달료	24,432	18,500	30	357,484	145,475	16
고지서발행비	20,308	15,378	25	297,154	120,924	13
지로수수료	56,727	42,955	69	830,024	337,771	37
안전점검비	392,469	297,188	477	5,742,625	2,336,911	256
계량기교체비	185,126	140,182	225	2,708,769	1,102,310	121
합계	1,399,057	1,059,403	1,700	19,046,010	7,750,608	850
평균수용가수	51,932	51,932		759,864	759,864	
기본요금	2,245	1,700		2,089	850	
기본요금적용분			1,700			850
기본요금반영비율			75.72%			40.69%

주1) 기본요금반영액 = 연간비용 × 기본요금반영비율

주2) 수용가당 기본요금 = 기본요금반영액 ÷ 수용가수 ÷ 12

## 1.2. 검토의견

검토 결과 현재의 난방용(개별난방) 기본요금 850원은 실제비용반영비율이 실제비용 2,089원의 40.69% 수준이며, 취사전용 및 지역난방 기본요금 1,700원은 실제비용반영비율이 실제비용 2,245원의 75.72% 수준으로서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를 일정부분 현실화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고, 교차보조를 해소하여 사용량요금을 인하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기본요금인상에 따른 소비자부담 회피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본요금을 동결한 도조정안도 에너지소량사용자의 에너지복지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 2.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 2.1. 고객센터 업무량 산정

고객센터별 업무량 산정을 위해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대상업무	가정
세대수	전월대비 월평균 0.17% 증가
검침	① 2023년 추정 기준 세대수에 원격검침비율을 고려하여 업무량 산정 ② 원격검침비율은 22년말 기준 실적치 15% 적용
계량기교체	2023년 사업계획(5년 또는 8년 교체 주기 도래분)에 따라 산정
이 외 업무	업무 활동별로 과거 실적치에 추정 증감율(과거 3개년 평균)을 적용

고객센터 업무량 산정을 위해 기준세대수를 구하고, 월간 활동횟수를 곱한 후 부재시 재방문 등 업무 LOSS를 감안한 조정계수를 곱하여 연간 필요한 고객전수를 계산하였습니다.

(단위 : 건)

2023년 대상업무	수행주체	중부	서부	동부	김해	남부	진해	기술
안전점검(연2회)	코디	211,373	174,144	117,766	138,247	109,910	88,223	3,761
검침(연12회)	코디	175,471	144,565	97,763	114,766	91,241	73,238	3,196
배부(연12회)	코디(*1)	112,194	92,433	62,509	73,380	58,339	46,827	1,880
검침표부착/철거	코디	141,364	116,466	78,761	92,458	73,507	59,002	-
안전홍보	민원기사	31,502	22,951	16,999	26,391	21,731	18,492	1
계량기교체	민원기사	46,691	35,675	31,378	31,417	21,495	18,484	1,794
특별점검	민원기사	1,459	368	174	1,258	382	123	787
전출승계/철거마감	민원기사	30,405	19,763	17,512	23,604	16,991	15,240	61
채권활동	민원기사	6,739	4,305	2,620	5,058	4,393	2,735	72
민원처리	민원기사	18,567	14,618	10,073	11,138	9,047	7,883	544
기사 안전점검	민원기사	13,014	10,722	7,251	8,512	6,767	5,432	-
기사 검침	민원기사	15,258	12,571	8,501	9,980	7,934	6,369	-
업무지원	서무	325,869	311,806	190,076	226,124	204,091	173,739	912

(\*1) 기술지원센터는 민원기사가 수행

다음은 각 고객센터 및 기술지원센터의 업무 활동별 방문횟수 및 투입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 고객센터

(단위 : 건)

2023년 대상업무	수행주체	방문횟수(회)	투입시간(분)
안전점검(연2회)	코디	2	8.05
검침(연12회)	코디	12	0.65
배부(연12회)	코디	12	0.29
검침표부착/철거	코디	1	0.63
안전홍보	민원기사	1	0.50
계량기교체	민원기사	1	25.00
특별점검	민원기사	2	20.00
공급전안전점검	민원기사	1	20.00
신규입주APT 임시공급	민원기사	1	10.00
전출승계/철거마감	민원기사	1	17.60
전입연결공급/기구	민원기사	1	21.20
보일러/가스렌지 연결	민원기사	1	12.93
채권활동	민원기사	1	12.00
민원처리	민원기사	1	20.65
기사 안전점검(5.8%)	민원기사	2	8.05
기사 검침(8%)	민원기사	12	0.65
업무지원	서무	1	3.00

## ○ 기술지원센터

(단위 : 건)

2023년 대상업무(연간)	수행주체	방문횟수(회)	투입시간(분)
안전점검(연2회)	민원기사	2	60.00
검침(연12회)	민원기사	12	15.00
배부(연12회)	민원기사	12	10.00
안전홍보	민원기사	1	30.00
계량기교체	민원기사	2	60.00
특별점검	민원기사	1	60.00
전출승계/절거마감	민원기사	1	60.00
채권활동	민원기사	3	60.00
민원처리	민원기사	1	60.00
업무지원	서무	1	30.00

평균 OT시간을 고려하여 수행주체별 인당 월 업무가능시간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건)

수행주체	1일 근무시간(분)	1개월 근무일	월 업무가능시간(분)
코디	480	20.75	9,960
민원기사	532	20.75	11,031
서무	532	20.75	11,031

고객센터별 연간 필요 고객전수를 바탕으로 일회당 업무 회수 및 투입시간을 곱한 연 업무시간과 월업무가능시간을 바탕으로 한 연 필요인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중부고객센터

(단위 : 건)

구분	직군	2023년 업무대상 (건)	횟수(회)	투입시간 (분)	연업무시 간(분)	월업무 가능시간 (분)	연필요인 원수(명)
안전점검(연2회)	코디	211,373	2	8.05	3,403,098	9,960	341.7
검침(연12회)	코디	175,471	12	0.65	1,368,671	9,960	137.4
배부(연12회)	코디	112,194	12	0.29	390,433	9,960	39.2
검침표부착/철거	코디	141,364	1	0.63	89,059	9,960	8.9
안전홍보	민원기사	31,502	1	0.50	15,751	11,031	1.4
계량기교체	민원기사	46,691	1	25.00	1,167,275	11,031	105.8
특별점검	민원기사	1,459	2	20.00	58,360	11,031	5.3
전출승계/철거마감	민원기사	30,405	1	17.60	535,129	11,031	48.5
채권활동	민원기사	6,739	1	12.00	80,868	11,031	7.3
민원처리	민원기사	18,567	1	20.65	383,405	11,031	34.8
기사 안전점검(5.8%)	민원기사	13,014	2	8.05	209,533	11,031	19.0
기사 검침(8%)	민원기사	15,258	12	0.65	119,015	11,031	10.8
업무지원	서무	325,869	1	3.00	977,608	11,031	88.6

## ○ 서부고객센터

(단위 : 건)

구분	직군	2023년 업무대상 (건)	횟수(회)	투입시간 (분)	연업무시 간(분)	월업무 가능시간 (분)	연필요인 원수(명)
안전점검(연2회)	코디	174,144	2	8.05	2,803,715	9,960	281.5
검침(연12회)	코디	144,565	12	0.65	1,127,609	9,960	113.2
배부(연12회)	코디	92,433	12	0.29	321,667	9,960	32.3
검침표부착/철거	코디	116,466	1	0.63	73,373	9,960	7.4
안전홍보	민원기사	22,951	1	0.50	11,475	11,031	1.0
계량기교체	민원기사	35,675	1	25.00	891,875	11,031	80.9
특별점검	민원기사	368	2	20.00	14,720	11,031	1.3
전출승계/철거마감	민원기사	19,763	1	17.60	347,824	11,031	31.5
채권활동	민원기사	4,305	1	12.00	51,660	11,031	4.7
민원처리	민원기사	14,618	1	20.65	301,869	11,031	27.4
기사 안전점검(5.8%)	민원기사	10,722	2	8.05	172,628	11,031	15.6
기사 검침(8%)	민원기사	12,571	12	0.65	98,053	11,031	8.9
업무지원	서무	311,806	1	3.00	935,418	11,031	84.8

## ○ 동부고객센터

(단위 : 건)

구분	직군	2023년 업무대상 (건)	횟수(회)	투입시간 (분)	연업무시 간(분)	월업무 가능시간 (분)	연필요인 원수(명)
안전점검(연2회)	코디	117,766	2	8.05	1,896,033	9,960	190.4
검침(연12회)	코디	97,763	12	0.65	762,554	9,960	76.6
배부(연12회)	코디	62,509	12	0.29	217,530	9,960	21.8
검침표부착/철거	코디	78,761	1	0.63	49,619	9,960	5.0
안전홍보	민원기사	16,999	1	0.50	8,500	11,031	0.8
계량기교체	민원기사	31,378	1	25.00	784,450	11,031	71.1
특별점검	민원기사	174	2	20.00	6,960	11,031	0.6
전출승계/철거마감	민원기사	17,512	1	17.60	308,208	11,031	27.9
채권활동	민원기사	2,620	1	12.00	31,440	11,031	2.9
민원처리	민원기사	10,073	1	20.65	208,006	11,031	18.9
기사 안전점검(5.8%)	민원기사	7,251	2	8.05	116,741	11,031	10.6
기사 검침(8%)	민원기사	8,501	12	0.65	66,309	11,031	6.0
업무지원	서무	190,076	1	3.00	570,229	11,031	51.7

## ○ 김해고객센터

(단위 : 건)

구분	직군	2023년 업무대상 (건)	횟수(회)	투입시간 (분)	연업무시 간(분)	월업무 가능시간 (분)	연필요인 원수(명)
안전점검(연2회)	코디	138,247	2	8.05	2,225,784	9,960	223.5
검침(연12회)	코디	114,766	12	0.65	895,174	9,960	89.9
배부(연12회)	코디	73,380	12	0.29	255,362	9,960	25.6
검침표부착/철거	코디	92,458	1	0.63	58,249	9,960	5.8
안전홍보	민원기사	26,391	1	0.50	13,196	11,031	1.2
계량기교체	민원기사	31,417	1	25.00	785,425	11,031	71.2
특별점검	민원기사	1,258	2	20.00	50,320	11,031	4.6
전출승계/철거마감	민원기사	23,604	1	17.60	415,439	11,031	37.7
채권활동	민원기사	5,058	1	12.00	60,696	11,031	5.5
민원처리	민원기사	11,138	1	20.65	229,997	11,031	20.9
기사 안전점검(5.8%)	민원기사	8,512	2	8.05	137,044	11,031	12.4
기사 검침(8%)	민원기사	9,980	12	0.65	77,841	11,031	7.1
업무지원	서무	226,124	1	3.00	678,373	11,031	61.5

## ○ 남부고객센터

(단위 : 건)

구분	직군	2023년 업무대상 (건)	횟수(회)	투입시간 (분)	연업무시 간(분)	월업무 가능시간 (분)	연필요인 원수(명)
안전점검(연2회)	코디	109,910	2	8.05	1,769,547	9,960	177.7
검침(연12회)	코디	91,241	12	0.65	711,683	9,960	71.5
배부(연12회)	코디	58,339	12	0.29	203,018	9,960	20.4
검침표부착/철거	코디	73,507	1	0.63	46,309	9,960	4.6
안전홍보	민원기사	21,731	1	0.50	10,865	11,031	1.0
계량기교체	민원기사	21,495	1	25.00	537,375	11,031	48.7
특별점검	민원기사	382	2	20.00	15,280	11,031	1.4
전출승계/철거마감	민원기사	16,991	1	17.60	299,039	11,031	27.1
채권활동	민원기사	4,393	1	12.00	52,716	11,031	4.8
민원처리	민원기사	9,047	1	20.65	186,816	11,031	16.9
기사 안전점검(5.8%)	민원기사	6,767	2	8.05	108,953	11,031	9.9
기사 검침(8%)	민원기사	7,934	12	0.65	61,885	11,031	5.6
업무지원	서무	204,091	1	3.00	612,272	11,031	55.5

## ○ 진해고객센터

(단위 : 건)

구분	직군	2023년 업무대상 (건)	횟수(회)	투입시간 (분)	연업무시 간(분)	월업무 가능시간 (분)	연필요인 원수(명)
안전점검(연2회)	코디	88,223	2	8.05	1,420,383	9,960	142.6
검침(연12회)	코디	73,238	12	0.65	571,255	9,960	57.4
배부(연12회)	코디	46,827	12	0.29	162,959	9,960	16.4
검침표부착/철거	코디	59,002	1	0.63	37,171	9,960	3.7
안전홍보	민원기사	18,492	1	0.50	9,246	11,031	0.8
계량기교체	민원기사	18,484	1	25.00	462,100	11,031	41.9
특별점검	민원기사	123	2	20.00	4,920	11,031	0.4
전출승계/철거마감	민원기사	15,240	1	17.60	268,228	11,031	24.3
채권활동	민원기사	2,735	1	12.00	32,820	11,031	3.0
민원처리	민원기사	7,883	1	20.65	162,785	11,031	14.8
기사 안전점검(5.8%)	민원기사	5,432	2	8.05	87,455	11,031	7.9
기사 검침(8%)	민원기사	6,369	12	0.65	49,674	11,031	4.5
업무지원	서무	173,739	1	3.00	521,217	11,031	47.3

## ○ 기술지원센터

(단위 : 건)

구분	직군	2023년 업무대상 (건)	횟수(회)	투입시간 (분)	연업무시 간(분)	월업무 가능시간 (분)	연필요인 원수(명)
안전점검(연2회)	민원기사	3,761	2	60	451,260	11,031	40.9
검침(연12회)	민원기사	3,196	12	1	24,932	11,031	2.3
배부(연12회)	민원기사	1,880	12	10	225,630	11,031	20.5
안전홍보	민원기사	1	1	30	30	11,031	0.0
계량기교체	민원기사	1,794	2	60	215,280	11,031	19.5
특별점검	민원기사	787	1	60	47,220	11,031	4.3
전출승계/철거마감	민원기사	61	1	60	3,646	11,031	0.3
채권활동	민원기사	72	1	60	4,320	11,031	0.4
민원처리	민원기사	544	1	60	32,621	11,031	3.0
업무지원	서무	912	1	30	27,374	11,031	2.5

## 2.2.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 (1) 검토의 배경 및 근거

도시가스 고객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 당사자별로 도시가스 고객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 1) 도시가스 소비자

- 서비스 기대 수준 증가에 따른 고객 서비스 품질 개선 요구
- 이사, 가스시설 점검 등 각 민원에 대한 신속한 응대 및 처리 요구 증대

#### 2) 도시가스회사

- 지역기반 회사의 이미지 개선 및 장기적 기업가치 상승 필요
- 가스시설 점검을 통한 사회적 책임 활동 강화

#### 3) 고객센터 직원

- 야간 및 휴일 근무, 고객 대면 스트레스 등 근무환경 개선 요구 증대
- 업무수준에 걸맞은 적절한 수준의 급여, 복지 등 처우 개선 요구 증대

#### 4) 고객센터 운영자

-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필요성 증대
-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로 인한 전문성 있는 인력 관리 애로
- 업무량 증가 대비 수수료 인상폭의 고착화 및 운영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개정되어 고객센터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산정하여 시도지사가 검토하고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 영업비용 제5항]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검침(원격검침 포함), 안전점검, 송달 등 고객센터 업무를 고려한 인건비(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  
(2013.6.5 신설, 2018.3.30 개정)

## (2) 고객센터 수수료 산정방법

### 1) 인건비

- 각 고객센터별 필요한 인원구성의 분석
- 인원구성별로 수행하는 업무의 파악
- 각 인원별로 1개월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량의 파악
- 1개월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량에 따라 기준 고객수 및 업무량에 대비하여 필요한 인원수를 산정
- 최저임금 및 동종업종 인건비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각 업무별, 직급별 인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의 산정

### 2) 복리후생비 등 제경비

인건비성 비용인 급여 및 퇴직급여와 4대보험을 제외한 모든 경비로서 각 고객센터의 실제 발생한 원가를 분석하여 적합하고 타당한 원가를 산정합니다.

### 3) 적정이윤

도시가스고객센터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에서 [D35. 전기,가스,중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의 기업순이익률을 한도로 회사에서 제시한 원가가산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4) 시설투자보수필요수입액

적정이윤을 가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는 제외하고 산정하였으므로 감가상각비에 대응하는 적정이윤을 별도로 산정하여 가산하고, 투자수익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에서 [D35. 전기,가스,중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 3.29%를 한도로 회사에서 제시한 투자수익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시설투자보수필요수입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text{시설투자보수필요수입액} = \text{평균장부가액} \times \text{투자수익율}(2.76\%)$$

## (3)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결과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승인금액	2022년 실지출액	회사제시액	회계법인 산정액	도조정액
표준인건비	12,868,313	15,277,280	13,195,476	13,195,476	13,195,476
운영비	2,029,090		2,504,003	2,504,003	2,504,003
적정이윤	357,236		460,008	460,008	460,008
시설투자보수	22,641		25,926	25,926	25,926
소계	15,277,280	15,277,280	16,185,413	16,185,413	16,185,413
도조정금액	-	-	-	-	-200,000
합계	15,277,280	15,277,280	16,185,413	16,185,413	15,985,413

개별 고객센터의 업무량을 분석하여 업무량에 필요한 적정 필요인력을 구하여 표준인건비, 운영비, 적정이윤과 시설투자보수를 합한 고객센터별 총괄원가 금액은 상기표와 같이 15,985,413천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총괄원가 방식의 고객센터 수수료의 각 항목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표준인건비

각 직무별 표준급여, 퇴직금의 월별 지급금액을 각 고객센터별, 월별 필요인원수를 반영하여 각 고객센터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중부	서부	동부	김해	남부	진해	기술	합계
월급여	2,679,978	2,203,829	1,553,217	1,664,051	1,413,625	1,178,792	421,303	11,114,794
퇴직급여	223,332	183,652	129,435	138,671	117,802	98,233	35,109	926,233
4대보험	278,229	228,824	161,324	172,821	146,833	122,471	43,947	1,154,450
합계	3,181,539	2,616,305	1,843,976	1,975,543	1,678,260	1,399,496	500,358	13,195,476

### 2) 운영비

운영비는 인건비성 비용인 급여 및 퇴직급여와 4대보험을 제외한 모든 경비로서 각 고객센터로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그 구성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중부	서부	동부	김해	남부	진해	기술	합계
감가상각비	41,312	4,914	32,070	17,129	12,462	25,201	30,280	163,370
도서인쇄비	2,160	2,160	2,160	2,160	2,160	2,160	2,160	15,120
보험료	46,860	37,800	30,000	31,920	26,720	24,000	17,760	215,060
복리후생비	108,623	93,795	75,210	78,396	70,224	63,654	46,968	536,870
세금과공과	11,083	11,083	11,083	11,083	11,083	11,083	11,083	77,584
소모품비	38,400	38,400	38,400	38,400	38,400	38,400	38,400	268,800
수도광열비	4,992	4,992	4,992	4,992	4,992	4,992	4,992	34,944
수선비	5,400	5,400	5,400	5,400	5,400	5,400	5,400	37,800
여비교통비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28,000
연수비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3,520	27,520
접대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16,800
지급수수료	25,800	25,800	25,800	25,800	25,800	25,800	25,800	180,600
지급임차료	48,600	30,000	42,000	21,600	26,400	14,400	8,652	191,652
차량유지비	107,760	80,760	64,560	69,960	53,760	48,360	42,960	468,120
통신비	55,692	46,512	33,912	36,072	31,272	26,712	11,592	241,764
합계	507,082	392,017	375,988	353,313	319,074	300,563	255,968	2,504,003

### 3) 적정이윤

각 고객센터별 표준발생원가에 원가가산율 2.97%를 적용하여 적정이윤을 원가와 함께 보상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중부	서부	동부	김해	남부	진해	기술	합계
표준인건비	3,181,539	2,616,305	1,843,976	1,975,543	1,678,260	1,399,496	500,358	13,195,476
운영비	507,082	392,017	375,988	353,313	319,074	300,563	255,968	2,504,003
㉠ 소계	3,688,621	3,008,321	2,219,964	2,328,855	1,997,334	1,700,058	756,326	15,699,479
㉡ 감가상각비	49,312	12,914	40,070	25,129	20,462	31,201	34,280	213,370
㉢ = ㉠ - ㉡	3,639,309	2,995,407	2,179,893	2,303,726	1,976,872	1,668,857	722,046	15,486,110
㉣ 원가가산율	2.97%	2.97%	2.97%	2.97%	2.97%	2.97%	2.97%	2.97%
㉤ 적정이윤	108,104	88,977	64,753	68,431	58,722	49,573	21,448	460,008

### 4) 시설투자보수

투자보수와 같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설비투자 등에 대한 보상은 감가상각비와 투자금액에 일정률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중부	서부	동부	김해	남부	진해	기술	합계
대상자산 평균장부가액	169,587	63,462	155,980	262,308	112,131	113,580	62,283	939,331
시설투자보수	4,681	1,752	4,305	7,240	3,095	3,135	1,719	25,926

## 2.3. 고객센터 수수료의 정산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표준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와 실제 지급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차액은 차기년도 공급비용 산정시 정산하여 반영합니다.

## VII. 공급비용 조정명세서

### 1. 총공급비용 명세서

(단위 : 천 원)

항목	산식	조정결과
적정원가	(1)	84,519,417
요금기저	(2)	240,701,635
투자보수율(%)	(3)	7.0418%
투자보수	(4) = (2) × (3)	16,949,751
투자재원	(5)	-
총공급비용	(6) = (1) + (4) + (5)	101,469,168
정산금액	(7)	-550,000
미공급지역 투자의무미이행조정액	(8)	-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감면 등	(9)	2,241,338
조정후 총공급비용	(10) = (6) + (7) + (8) + (9)	103,160,506
추정판매열량(천MJ)	(11)	41,380,575
단위당 공급비용(원/MJ)	(10) ÷ (11)	2.4930

**2. 공급비용 조정명세서**

(단위 : 천원)

과목	전기발생액	회사추정액	조정액	요금반영액	비고
인건비					
임원급여	1,267,397	1,107,039	-150,000	957,039	
직원급여	16,842,408	19,320,222	-1,315,862	18,004,359	
퇴직급여	1,351,223	1,717,913	-286,733	1,431,180	
소계	19,461,027	22,145,174	-1,752,595	20,392,579	
감가상각비	34,818,438	23,847,698	-30,192	23,817,506	
무형자산상각비	1,110,406	1,050,942	-53,779	997,163	
소계	35,928,844	24,898,641	-83,972	24,814,669	
기타경비					
복리후생비	2,888,361	3,150,875	-93,220	3,057,655	
여비교통비	49,855	85,948	-36,820	49,128	
통신비	412,254	440,061	-21,524	418,537	
수도광열비	434,446	276,984	-41,528	235,456	
세금과공과	1,433,166	1,684,530	-413,527	1,271,003	
소모품비	509,444	800,389	-72,312	728,077	
수선비	2,410,116	3,590,425	-843,009	2,747,416	
보험료	309,096	422,797	-98,605	324,192	
접대비	115,645	39,600	-	39,600	
지급수수료	4,470,891	5,089,117	-508,593	4,580,523	
도서인쇄비	41,678	48,567	-	48,567	
광고선전비	274,731	226,466	-	226,466	
안전관리비	2,692,368	3,439,890	-430,816	3,009,074	
차량유지비	971,213	1,195,501	-256,600	938,901	
회의비	44,363	39,390	-	39,390	
연수비	382,235	484,482	-112,636	371,846	
대손상각비	576,860	613,795	-453,539	160,256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1,096,101	909,960	-13,483	896,478	
고객센터수수료	15,277,280	16,185,413	-200,000	15,985,413	
소계	34,390,102	38,724,190	-3,596,213	35,127,977	
계	89,779,973	85,768,004	-5,432,780	80,335,224	

### 3. 영업외비용 조정명세서

(단위 : 천원)

과목	전기발생액	회사추정액	조정액	요금반영액	비고
기부금	180,846	180,846	-180,846	-	
유형자산처분손실	47	-	46	46	
잡손실	194,307	109,753	-	109,753	
계	375,200	290,598	-180,800	109,799	

### 4. 영업외수익 조정명세서

(단위 : 천원)

과목	전기발생액	회사추정액	조정액	요금반영액	비고
유형자산처분이익	22,630	21,995	-6,817	15,178	
잡이익	1,180,086	357,874	41,714	399,588	
계	1,202,716	379,869	34,897	414,766	

### 5. 요금기저 명세서

(단위 : 천원)

항목	산식	금액
운전자금	(1)	9,413,504
유형자산	(2)	229,664,821
무형자산	(3)	1,622,589
임차보증금	(4)	722
계	(1)+(2)+(3)+(4)	240,701,635

## 6. 운전자금 명세서

(단위 : 천원)

항목	산식	기화비용	공급비용	판매비	관리비	계
가스부문의 각 부문별 조정액 합계	(1)	-	80,335,224	-	-	80,335,224
감가상각비	(2)	-	23,817,506	-	-	23,817,506
대손상각	(3)	-	160,256	-	-	160,256
무형자산상각비	(4)	-	997,163	-	-	997,163
퇴직급여	(5)	-	1,431,180	-	-	1,431,180
소계	(6)=(2)+(3)+(4)+(5)	-	26,406,105	-	-	26,406,105
퇴직급여 현금지출액	(7)	-	2,551,905	-	-	2,551,905
현금지출경비	(8)=(1)-(6)+(7)	-	56,481,025	-	-	56,481,025
운전자금	(8)×2÷12	-	9,413,504	-	-	9,413,504

## 7. 유형자산 명세서

(단위 : 천원)

과목	전기말 미상각잔액	당기증가 계획치	당기감소 계획치	당기감가상각액				기말미상각 잔액	기초·기말 평균액	재평가차익 등
				당기증가분	당기감소분	기존분	소계			
				(4)	(5)	(6)	(7)=(4)+(5) +(6)			
(1)	(2)	(3)	(4)	(5)	(6)	(7)=(4)+(5) +(6)	(8)=(1)+(2) -(3)-(7)+(5)	(9)= ((1)+(8))÷2		
토지	10,536,541	-	-	-	-	-	-	10,536,541	7,898,229	2,638,313
건물	8,140,942	895,195	-	14,918	-	509,291	524,209	8,511,927	8,326,435	
구축물	379,647	-	-	-	-	131,725	131,725	247,922	313,785	
기계장치	-	-	-	-	-	-	-	-	-	
공급설비	209,074,838	19,949,543	-	498,739	-	21,441,402	21,940,141	207,084,241	208,079,539	
인입배관	-	-	-	-	-	-	-	-	-	
차량운반구	852,249	374,490	-	37,449	-	239,518	276,967	949,772	901,011	
공구와기구	2,662,397	1,724,275	-	172,428	-	772,037	944,464	3,442,208	3,052,303	
기타의유형자산	190,070	-	-	-	-	-	-	190,070	190,070	
건설중인자산	581,840		-		-	-	-	581,840	941,384	
계	232,418,526	22,943,502	-	723,533	-	23,093,973	23,817,506	231,544,522	229,702,755	
비가스사업용자산비율(10)			0.18%	비가스사업용자산액 (11)=(9)×(10)		37,934	요금기저자산 (12)=(9)-(11)		229,664,821	

8. 유형자산 취득계획서

(단위 : 천원)

과목	취득예상가액				상각률	예상감가 상각액	요금기저포함 건설증인자산
	기초건설증인 자산	당기투자 계획금액	기말건설증인 자산 추정치	취득예상가액			
	(1)	(2)	(3)	(4)=(1)+(2)-(3)			
토지	-	-	-	-	-	-	-
건물	-	895,195	-	895,195	3.33%	14,918	-
구축물	-	-	-	-	6.67%	-	-
기계장치	-	-	-	-	6.67%	-	-
공급설비	1,337,726	34,567,118	1,617,939	34,286,905	5.00%	857,173	-
인입배관	-	-	-	-	-	-	-
차량운반구	-	374,490	-	374,490	20.00%	37,449	-
공구와기구	-	1,724,275	-	1,724,275	20.00%	172,428	-
기타의유형자산	-	-	-	-	20.00%	-	-
건설증인자산	-	-	-	-	-	-	-
계	1,337,726	37,561,077	1,617,939	37,280,864		1,081,968	941,384
(8) 공급설비 감가상각액 배부	시설분담금 및 투자재원 감가상각액			358,434	(9) 당기 시설분담금 징수예상액 및 투자재원 투자분	14,454,536	
	회사조달분 감가상각액			498,739	(10) 당기공급설비 투자계획금액	34,567,118	

**9. 건설중인자산 명세서**

(단위 : 천원)

항목	산식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급설비	인입배관	차량 운반구	공구와 기구	기타의 유형자산	계
건설중인자산적수	(1)	-	-	-	-	16,052,710	-	-	-	-	16,052,710
건설중인자산 평균월말잔액	(2)=(1)÷12	-	-	-	-	1,337,726	-	-	-	-	1,337,726
전기투자금액	(3)	-	-	-	-	28,580,396	-	-	-	-	28,580,396
당기 시설분담금 징수예상액 및 투자재원 투자분	(4)	-	-	-	-	14,454,536	-	-	-	-	14,454,536
당기투자계획금액	(5)	-	895,195	-	-	34,567,118	-	374,490	1,724,275	-	37,561,077
당기 평균건설중인자산	(6)=(2)× [(5)-(4)]÷(3)	-	-	-	-	941,384	-	-	-	-	941,384
자기자본	(7)	251,094,537									
차입금	(8)	1,756,477									
자기자본비율	(9)=(7)÷[(7)+(8)]	100.00%									
요금기저 산입 건설중인자산	(6)×(9)	-	-	-	-	941,384	-	-	-	-	941,384

**10. 가중평균 투자보수율 명세서**

(단위 : 천원)

항목	산식	금액
자기자본금액	(1)	251,094,537
타인자본금액	(2)	1,756,477
자기자본보수율(%)	(3)	7.0723%
타인자본보수율(%)	(4)	2.6895%
가중평균투자보수율(%)	$[(1) \times (3) + (2) \times (4)] \div [(1) + (2)]$	7.0418%

**11. 자기자본수익률 산정명세서**

(단위 : 천원)

항목	산식	금액
무위험이자율	(1)	3.3189%
시장위험프리미엄	(2)	6.0000%
적용베타	(3)	0.6256
자기자본수익률	$(1) + (2) \times (3)$	7.0723%

**별첨. 전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및 기본요금**

(공급비용단위 : 원/MJ, 기본요금단위 : 원)

지역명	회사명		공급비용			기본요금 (2023년 6월 현재)
			2020년	2021년	2022년	
경남	경남에너지	창원	2.3942	2.3764	2.3764	(취,지)1,700/(개)850
	경동도시가스	양산	1.8949	1.8763	1.8763	(지)1,700/(취,개)850
	지에스이	진주,사천	2.7834	2.7834	2.7834	(지)1,700/(취,개)1,100
서울	코원ES 외		1.4176	1.4176	1.4176	1,000
경기	코원ES 외		1.4600	1.4600	1.4600	965
인천	삼천리 외		1.3596	1.4338	1.4338	840
부산	부산		2.0349	2.0349	2.0349	900
대구	대성		1.9364	1.9345	1.9772	820
광주	해양에너지		1.9591	1.9591	1.9591	750
대전	씨앤씨티		2.3213	2.3177	2.4320	850
울산	경동도시가스		1.0617	0.9881	0.9881	778
세종	JB		2.3100	2.4169	2.7678	(취)2,533/(개,중)760
강원	강원도시가스	춘천,홍천	3.1304	3.2388	3.2898	950
	참빛원주도시가스	원주,횡성	2.5042	2.5245	2.5042	950
	참빛영동	강릉,동해	4.4213	3.6925	3.5961	950
	참빛	삼척,속초	4.4213	3.6925	3.5961	950
	명성파워그린	평창	3.5992	4.6816	3.8708	950
충북	충청ES	청주,제천	1.9716	1.9996	2.0039	950
	참빛충북	충주	2.2117	2.1760	2.1805	950
충남	미래엔서해에너지	서산,당진	1.5362	1.6058	1.6537	(취)2,400/(개)820
	JB	천안,아산	2.1051	2.3326	2.4879	820
전북	전북	전주,김제	1.8944	1.8305	1.8305	750
	군산	군산,임실	1.7979	1.7707	1.7475	750
	전북ES	익산,정읍	2.8369	2.8113	2.5545	(취)1,315/(개)750
전남	해양	나주,화순	2.6727	2.7316	2.8622	770
	목포	목포,무안	2.6981	2.8083	2.8405	770
	전남	순천,광양	2.2393	2.2546	2.4461	770
	대화	여수	1.3053	1.0190	1.0509	770
경북	영남에너지	포항	2.1943	2.1139	2.1317	750
	영남에너지	구미	2.1087	2.0724	2.1158	750
	서라벌	경주	2.1644	2.1423	2.1128	750
	대성청정	안동	2.3348	2.4888	2.5027	750

\* (취): 취사전용, (개): 개별난방, (중): 중앙난방, (지): 지역난방